

「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 서

(의안번호 제1974호)

- 「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 또는 점포의 임차권리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
 - 그간,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·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 발생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고, 지방자치단체의 ‘조례’로 임차권리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(‘16. 4.)을 받았으며,
 - 2016년도 감사원의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시 조례개정 미추진을 이유로 부서장 확인서와 본부장 질문·답변서를 징구한 점을 볼 때,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조례안과 같이 임차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